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간 근로에 대하여 일정의 급여(8시간의 근로와 4시간의 초과근무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지급하기로 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시까지 위와 같은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한 액을 수령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한 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이상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경비직 1일2교대로 12시간씩 일하고 일당급여를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감시·단속직 근로자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이상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한국총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031-877-7882-3)

이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 근로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

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경비원이 1일2교대로 12시간씩 일하고 일당급여 받기로 했다면 법정수당 적용 여부

회사는 경비원으로 일할 당시에 1일2교대제로 하루 12시간씩 경비직 근로에 종사하고 임금은 12시

전·기·상·식

한전포천지점 고객지원과 노상곤



신청방법은 상기 자동이체납부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고객의 e-mail 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추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납부 신청절차는?

전기요금 자동이체납부는 전기요금 납기일에 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인출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써 한전 지점 또는 123번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납부시에도 전월에 자동이체된 영수증과 당월분 자동이체 청구서를

매월 고객님께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빌링 요금 납부방법은?

인터넷빌링이란 전기요금 내역을 인터넷상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e-mail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받은 후에 전기요금은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지로, 지정계좌와 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빌링

전기요금을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는 없는지요?

전기요금청구서에 의해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공과금자동납부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고객전용 지정계좌와 가상계좌로 전기요금을 자동정입할 수도 있고 요금수납이 약정된 24시간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한전 청구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전력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839-03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산부인과 과장 고영채



17) 가슴쓰림(명치) : 커진 자궁이 위를 압박하고 식도의 하부 괄약근이 이완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산제 등의 간단한 처방으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심장 이상의 경우에도 증상이 이와 유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임신중 알아두면 좋을 상식2

- 11) 카페인(커피) : 카페인이 기형 유발인자는 아니나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자연 유산과 연관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마시지 않도록 하고 커피를 마신다고 임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마시고 싶은 경우 이외에는 자제한다.
12) 허리통 : 심하지 않은 경우는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정형외과 진료를 한 번쯤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임신중 허리나 골반, 엉덩이의 통증은 분만시 골반이 잘 벌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말도 있고 분만후에는 대개 통증이 사라지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13) 치질 : 임신중 변비나 자궁에

의한 압박등으로 치질이 생길 수 있는데 임신중 발생한 치질은 분만후 소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중에는 좌욕, 대변연화제등으로 증상 치료를 하고 수술은 시행하지 않는다.
14) 피로, 피곤함 : 임신 초기에 많고 대개 임신 4개월 정도면 호전된다.
15) 두통 : 임신 초기에 흔하고 임신 중반기이후에 대개 소실된다.
16) 질분비물, 질염 : 임신시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점액질의 분비가 증가되어 질분비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산모들은 이를 질염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가벼운 뒷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단, 가려운 증상이 심하거나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찰을 받도록 한다.

*포천병원(031-539-9114)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중중총회 구성원인 증원의 범위 확정과 그 소집통지방법】 중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증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중중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판례를 보면, "중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중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분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중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증원의 범위확정방법과 그 소집통지

방법 및 일부 중증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중중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판해?보면, "중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중증원의 범위를 확정할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중증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중증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중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중증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21555 판결). 또한, "중중의 증원에 관한 세보가 발견되었다면 그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중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증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1555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60668 판결).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증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증원의 범위를 확정할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증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그러나 중중총회 소집통지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중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중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증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증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2차 피해)

2차적 피해로는 1차적 범죄 발생 후에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2차적인 피해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 이외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비난이나 불신, 주변사람들의 책망, 호기심, 자기 노출 등으로 오는 사회적인 피

해를 들 수 있다.(김용세(2004),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학생생활 연구,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첫 번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비난과 불신으로 일방적인 범죄피해자들이 절도, 사기, 폭행 등과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책임이 있다고 비난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적 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불신하는 것이 거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책임론을 내면화하지 않고 자책감을 가지거나 시달리지 않더라도 피해생존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신과 비난의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피해로 피해자의 유발을 의심하는 질문, 피해자 성격함에 대한 질문, 사정여부에 대한 질문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진술을 받고 나와서 가해자와 부딪치는 경우 심한 불안감과 분노의 감정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상속공제금액과 상속이후 재분할 문제】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금액과 상속받은 재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발생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은 죽을이라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으면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쳐 재산의 명의를 변경되며 이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자녀가 있을 경우

1차 상속권이 있으며 배우자(피상속인의 처)는 자녀와 동등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먼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꼭 하셔야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자녀상속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받는 상속금액 중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자녀상속분에 5할을 더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원이며, 자녀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면 배우자에게 얼마를 상속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분까지 상속하면 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정화하지는 않으나 1차 상속등기 후 상속인 간에 재산을 교환하거나 재분할 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재산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최초 상속등기 시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에도 상속인간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포천신문 각 위원회 6월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본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지역정문지로 발전하는데 각 전문분야별 자문역할 및 자문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함.



■일시: 2007년 6월 12일(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포천신문 대회의실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본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문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위원상호간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함.



■일시: 2007년 6월 8일(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어도일식

조사위원회 임원회의

본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문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사를 취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포천신문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봉사과 동시에 위원회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함.



■일시: 2007년 6월 7일(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청정식당